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 준 오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
노원구 제4선거구 서준오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

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지난 8월 29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현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르면, 안전진단 비용을

‘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’고 임의규정하여 자치구가 비용 지원할지, 요청자에게 부담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고 인천과 경기도의 일부 자치구는 임의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를 통해 ‘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요청자가 안전진단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함’을 강행규정하고 있어 자치구 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이는 오랜 기간 주민 모금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충당되면서 현지 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

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시행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게 할 경우 무분별하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우려가 있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하여 요청자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건축물과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 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.

오랜 기간 심사숙고하여 그동안 제기되던 비용 지원에 대한

형평성 문제 해소와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았습니다.

도시의 기능회복 등을 위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